

# 한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

제정 2021.03.01.  
1차 개정 2023.02.21.  
2차 개정 2023.04.05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의 유아교육 및 돌봄 운영에 관해 필요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원은 한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명한다.

제3조(위치) 본원은 경기도 시흥시 능곡군자로 2에 위치한다.

## 제2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 · 학기 · 휴업일

제4조(교육연한 및 학년도) 본원의 교육연한은 1~3년으로 하고,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학기)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 일수·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6조(휴업일)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1. 국경일 및 공휴일
2. 토요일
3. 개원기념일
4. 원장 재량휴업일
5. 하계, 동계, 학년 말 휴가
6. 기타 국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

② 제1항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와 제3호, 제4호의 휴업일을 고려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8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장이 정한다.

③ 유치원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⑤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수업일수에 포함한다.

---

### 제3장 학급편제 및 정원

---

제7조(학급편제) 본원의 학급수는 일반학급 6학급을 운영하고, 인가 학급 범위 내에서 방과후 과정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.

제8조(정원) 본원의 정원 및 학급별 정원은 당해년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 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.

---

###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

---

제9조(교육과정 및 교육내용) ①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한다.

② 교육내용은 유치원 및 지역사회의 상황,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운영한다.

③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,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하며 놀이와 쉬이 있는 돌봄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한다.

---

###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

---

제10조(수업일수)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. 다만,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.

1.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(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 : 수업일수의 10분의 1

2. 유아교육법 제31조 제1항·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: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

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, 경기도교육청 지침의 최대가능일수를 적용한다.

제11조(수업시간) ① ① 본원의 하루 수업시간은 교육과정의 경우 4~5시간, 방과후 과정은 기본과정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, 계절,

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.

② 1일 교육 활동의 시종 시각은 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.

**제12조(수업운영방법)** ① 수업 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교사는 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-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③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인근 유치원, 학교와 협력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 또는 학급을 달리하는 유아를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.

④ 국가적 재난 상황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,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 등 수업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.

---

## 제6장 입학, 재입학, 전학, 휴학, 퇴학, 수료 및 졸업

---

**제13조(입학시기)** ① 입학시기는 10월 1일까지로 하며, 학급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.

② 본원의 중도 입학은 당해연도 유아선발 및 결원 충원 계획에 의거한다.

**제14조(입학자격 및 선발기준)**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로 한다.

② 본원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본원에 입학할 희망하는 유아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'처음학교로'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입학한다.

2. 본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재입학/편입학/전학)**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재입학/편입학/전학을 허가한다.

**제16조(휴학/퇴학)**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이나 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학서 및 퇴학서를 받아 처리한다.

①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
1.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

2.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일정하지 않을 때

3.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

**제17조(수료 및 졸업)** ① 원장은 유아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.

1. 수료대상 : 만 3세 유아, 만 4세 유아

2. 졸업대상 : 만 5세 유아

② 수료 및 졸업의 대상은 수료 및 졸업일에 재적중인 유아에 한한다.

---

## 제7장 교직원

---

**제18조 (교직원의 임무)** 본원의 각 교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원장은 직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, 유아를 교육한다.
-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,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교육한다.
- 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.

**제19조(연수)**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재연구, 수업연구, 교직원 연수 등은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계획에 의한다.

---

## 제8장 유치원운영위원회

---

**제20조(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)** ① 유아교육법 제1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거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
**제21조(구성)**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한여울초등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하며, 한여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.

②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유치원 교원위원 1명, 학부모위원 1명을 포함한다.

**제22조(기능)**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.

1.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
2.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4.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
5.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
6.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7.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
8. 「교육공무원법」제29조의 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등에 관한 사항
9. 「교육공무원법」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
10.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11. 유아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

---

##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 비용 징수

---

제23조(수업료 및 입학금) 본 유치원의 유아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(교육부령)과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4조(기타 비용 징수)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징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.

---

## 제10장 규칙 개정 절차

---

제25조(규칙개정)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이 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·자문을 거쳐 확정·시행한다.

제26조 (규칙개정 절차)

- ① 규칙은 유치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수립한 후 입안예고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개정한다.
- ② 제1항의 규칙 개정안은 원장에 의해 제안되며,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③ 개정 시 법령(법, 조례, 지침 등) 범위 내에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27조 (시행규칙)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, 기타 지침,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
---

## 부 칙

---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규칙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.